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. 10. 10 선고 2024가단1030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0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소외 C[D생,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, F호]과 피고 사이에 2023. 7. 1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강세빈

별지